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2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.

발 의 자 : 홍성국 · 강선우 · 강준현

김경만 • 노웅래 • 문정복

민병덕 · 박성준 · 양기대

양이원영•양정숙•윤준병

이광재 · 이상민 · 이용선

인재근 · 장철민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·공간·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있음.

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,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국토교통부 고시인 「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」 제6조에 따르면, 성능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게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 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하여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기존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,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).

법률 제 호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2제3항 중 "요구할 수 있다"를 "명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공공건축물의 에너지	제13조의2(공공건축물의 에너지
소비량 공개 등) ①・② (생	소비량 공개 등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	③
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	
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	
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	
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	
을 요구할 수 있다.	명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